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적용 여부 관련

소방차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구도심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의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해 피난방화규칙 제1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위치는 허가권자가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에서는 위와 관련 별도의 완화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